

청년주거급여지원사업

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가구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

지원 대상

신청자	나이	만 19세~30세
	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기준중위소득 46%이하 ※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청년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되,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※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	분리 거주 예외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(구)와농촌(군)으로 분리거주 하는 경우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경우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· 만성 ·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경우
	신청인	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관계인, 담당공무원

지원 내용

- ◇ 지역별, 가구원수별,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
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- ◇ 지급일 매월 20일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
지원 절차

- ◇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◇ 신청서류
 -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신청서(신청인의 신분증지참)
 -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/ 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- 분리거주사실확인 증빙서류 / 최근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
- ◇ 신청 및 진행과정
 - 신청(행정복지센터) ➯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➯ 결과 / 발표
 - » 이의신청 ➯ 급여지급 및 관리
- ◇ 문 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